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-1조제1호 중 “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”를 “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”로 하고,
같은 호 “사.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제6-11조의2 및 제6-18조의3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

부칙 <제2019-53호, 2019. 12. 10.> 제2조 중 “2021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-1조(지급여력금액) (생 략)</p> <p>1. 기본자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<u>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	<p>제7-1조(지급여력금액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기본자본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사. 제6-11조의2 및 제6-18조의3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의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따라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초과액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</u></p> <p><u>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부칙 <제2019-55호, 2019. 12. 10.></p> <p>제1조 (생 략)</p> <p>제2조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 <u>2021년</u>-----.</p> <p>제3조 (생 략)</p>	<p>부칙 <제2019-55호, 2019. 12. 10.></p> <p>제1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 <u>2022년</u>-----.</p> <p>제3조 (현행과 같음)</p>